• 심평원 조사 • 보건소 조사 • 소방서, 세무서, 식약청 등 등 현지조사 업무 수행 업무수행

- 현지조사 법적 권한,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지원 받아 현지조사 관장

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워 - 대상기관선정, 조사 실시, 정산 심사, 행정 처분, 사후 관리 등

조사반 구성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

• 의원급(약국): 3명 x 3일

● 병원급: 4명 x 5일

• 보건 복지부

행정조사 종류

• 복지부 실사

• 공단 조사

- 심사 및 현지확인과 비교
- 종합병원급 이상 : 5명 이상 x 6일 14일

심사평가원

법적 근거

법 제97조 제2항

법 제47조 제2항

시행규칙 제20조

법 제14조, 제57조

- 수진자 조회 등 현지조사 업무 지원

- 현지조사 업무 전반 지원

- 구분 주관 현지조사 보건복지부

방문심사

현지확인 건보 공단

				현지결	Č사 의뢰 	
١	현지	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				
			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흐름도			
				현지조사 계획수립 및	실시	
	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					
		• 부당청구감지/ • 본인부담금 과		보건복지투	제도운영상 또는 사회문제가 된 분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되는 분야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행정처분 불이행 의성	l 우려 기관
ı						

조치 사항

행정처분 형사고발

심사조정

현지조사 의뢰

부당금액[환수]

부당금액환수

심사평가원 공단 대외기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및 진료 받은내용 문의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국민권익위원회, 확인 혹은 인지된 리원회, 검찰 등에 인지된 부당청구 -의심기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기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기관 • 보장기관에서 의뢰된 기관 • 민원제보 기관 등 •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기관 • 민원제보 기관 등 공단 조사 1. 어디에서 나왔나? 대답: "공단에서 나왔습니다" 대응: 공문 봅시다 (자세히 읽어본다) 2. 조사성격? 증거수집 목적이 강하다 3. 상대방 무기 - 공단조사 불응시 복지부에 실사 요청 권한만 있다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 → 조사협조요청이다 문제제기 1) 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권한이 어디 있나?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해야(행정조사기본법 4조3항, 14조) 2) 왜 사전 통보 안 했나? (행정조사기본법 17조 - 7일전 통지의무) 3) 조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면 안 된다 (행정조사기본법 15조 중복조사제한) 건보공단 조사 후 심평원 실사 의뢰 동일 사안 재조사 4) 조사내용과 범위를 왜 고지하지 않나?

서면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 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

조사명령서

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라 귀 요양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자의 관계 서류 검사, 질문, 자료계술 요구에 성실히

제출(검사)자료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서류 및 기파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장관이 조사자에게 당해 요양기관에

대한 현지조사를 명한 문서

조사자의 검사, 질문,자료제출 요구

것을 요청

등에 성실히 응할

현지조사 절차

- 도착 》신분증 제시 》조사명령서 전달 》조사내용 통보 현지조사 명령서 등
-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사 대상이 된 사유를 명시
- 6. 조사자 : 보건복지부 OOO서기관(사무관), OOO주무관

l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0,000,000 (필요시 조사인원을 추가 투입) 2000, 00, 00, 보건복지부장관 현지조사 명령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(의료)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① 대 요양(의로급이)기관명 상 주 소 기 대표자 성명 □□○○(12345678) 장관이 현지조사에 서울특별시 〇〇구 XX로 100. (△△동 홍길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 20〇〇년〇〇월~20〇〇년〇〇월,(〇개월 진로분) ② 서류제출 대상기간 하는 문서 거짓·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-1 추가 서류제출 20〇〇년〇〇월~20〇〇년〇〇월(○개월 진료분) 대상기간 기본원칙) 해당 요양기관의 조사내용 관련 서류로 최소회 진료(조제)기록부(방사선필름 포함), 개인별 투약기록지, 처방전 나, 본인부담급 수납대장(진료비 계산서) 및 접수대장 등 다. 비급여(100/100 포함)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정수대장 라, 의약품 및 진료용 제료의 구임에 관한 서류 (의약품 구입내의 목콕표, 의약품 수불대장, 거래병세서 등) 마. 요양기관 일반현황·인력현황 등 바,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※ 진료(조제)기록부, 개인별 투약기록지 등 위 제출자료를 전산으로 기록(보관)하는 요양(의료급여)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등 기록(저장)된 전산자료(데이타베이스 포함) 일체(원본)를 조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한다. 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 -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를 조사명맹서의 조사자에게 제출하여 20〇〇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배 제출명령 거부시 조치: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(의료)급이비용 챙구의 격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진장보험법 제98조 및 의료급여번 제28조에 따라 요양 (외료급여)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

대법원 2. 3-4일 조사시(심리상태: 두려움, 회피), 사전처분서 받았을 때 (심리상태: 분노, 대책찾음), 행정처분시 (절망)

관계서류 조사

관련근거

복지부실사

심평원 실사 대응

이의신청 →

•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관한 서류 •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

• 관계서류제출명령위반

• 조사 거부ů방해ů기피

-> 업무정지1년, 1천 만원 이하 벌금

• 거짓보고

•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

•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

• ※ 요양기관이 해당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 하게 서류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함 현지실사 대비

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, 서류제출 명령 위반에 해당함

● 판결요지 - 관계 법령상의 관계서류 작성 및 보존의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작성하지

4. 3-4일동안 돈 벌려고 하지 마라! 5. 사실확인서 (원장&직원) 조심 : 쓰지 않는 것이 좋다(확인자의 권리) → 본대로 처분해라 작성의미는 해당 부분에

대해 향후 이의신청, 행정소송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

2. 실사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멘토와 반드시 상의하라!

1. 평소 사전 지식을 최대한 알아 두라 (유비무환)

• 대응책: 보신대로 처분해라, 사실여부를 떠나 안 하고 싶다. 현지조사시 사실확인서 타협으로 좋은 결과 얻기 힘든 이유

1) 그들의 방문 목적: 처벌(실적) 목적 (o), 계도 목적(X)

- 4) 사실상 이의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의미

3) 조사 이후의 진행 절차는 그들의 권한이 아니므로 조사원이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

- 현지실사의 대응팁
- 1) 중요한 것은 원장이 직접 해야 : 의료기관 내부 고발이 많음
- 3) 입증 책임은 복지부에게 있음 : EX) BMD를 간호사가 했다? → 모든 사례에 대해 건건이 복지부가 누가 했는지
- 2) 평소에 최대한 규정에 맞게 : 나중에 6배 환수
- 입증을 해야 함 -> 생각없이 포괄 확인서 쓰면 안 됨
- 3-4일 조사의 핵심으로 조사관이 돌아가기 전에 요구 : 위의 전체 과정 중 2단계 이후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는 의미
- 4) 실사 왔을 때는 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사에 집중해야!

조사 불응시 공단의 무기? → 없다

2) 타협해서 좋은 결과 거의 보지 못함

1) 현지조사 의뢰 가능(조사 응하면 현지조사 없냐? 전혀 그렇지 않음)

공단이 조사 목적과 범위를 밝히지 않는 조사 : Ex) 차트 일체, 수납대장

요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

사전통지 미실시 '선정심의 위원회'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심의한 요양기관

1) 그들의 방문 목적 : 공단 실적 자기 실적 2) 타협 당시 전혀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없음 3) 조사 이후의 진행 절차는 그들의 권한이 아니므로 조사원이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

4) 즉 타협은 그들의 회유 술책이다!

공단조사시 타협으로 좋은 결과 얻기 힘든 이유

- 일체 미련 갖지 말고 차라리 실사로 가라! 사유 차분히 대비할 수 있다 (공부하고 시험치는 것이 낫다)
- 현장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사전통지 실시 '선정심의 위원회'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

사전통지 》도착 》신분증 제시 》조사명령서 전달 》조사내용 통보

- 2, 조사기간: 2000, 00, 00, 부터 장관의 명을 받고 8. 조사범위 :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계반 사항 4. 조사대상기간 : 20〇〇년 〇〇월~20〇〇년 〇〇월 온 적법한 조사자 2000년 00월~2000년 00월(0개월 전로분) * 거짓 ·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연장 임을 증명

행정소송 1심 → 행정소송2심 →

3-4일 조사 후 돌아감 → 3-6개월 후 사전처분서 →

1. 어디서 나왔나? 심평원 → 공문 봅시다 2. 조사성격: 계도가 아니라 처벌을 목적

3. 거부시 - 국민건강보험법 98조2항 영업정지 1년

1. 전체 과정 이해 : 현지조사 이후 3년정도의 쟁송기간

3-6개월 후 행정처분(면허정지, 과징금, 업무정지) →

4. 핵심: 1단계인 3-4일 조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잘 대응해야 한다.

• 계산서 · 영수증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

•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(서류의보존)

5년간 보존

3. 회원들 문제점 - 3단계, 4단계에서 대책을 세우고 연락한다. 예후: 굉장히 나쁘다

서류제출 명령 위반의 범위 현지조사 결과(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) - 조제기록부,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음 • 요양기관 주장내용 - 조제기록부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

이를 서류제출 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

사실확인서 (매우 중요)

3. Yes or No 가 아니라 Wait 도 있음

- 헌법12조2항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, 헌재 판례 : 형사처벌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
- 5) 즉 타협은 그들의 실적 확보를 위한 회유 술책이다!

2) 타협 당시 전혀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없음